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○ 존경하는 김영옥 위원장님!

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국민의힘 도봉구 제3선거구 박석 의원입니다.
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과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
○ 이번 개정안은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개정으로

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보호·지원시설에

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,

시장이 육성·지원해야 하는 피해자 보호시설에

해당 시설을 추가하여 여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

발의하였습니다.

○ 또한,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으로

불법촬영물등·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이

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추가됨에 따라,

기존의 ‘디지털성범죄 예방 등’에 관한 조항은 삭제하고
법적 근거를 명시한 ‘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’ 조항을 신설하여
관련 조항들과의 조문 체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